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3일 08시 22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판매인의 지정	3

판매인의 지정

2014.04.17 조회수 557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13
담당부서	도시미화과
상위법령	폐기물관리법 제4조
규칙	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
유형	1호 - 지정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1998-04-04
규제시행/폐지일	1998-04-04
규제내용	제11조(봉투판매인의 지정) ①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의 소매업(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)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(개정 99. 6. 17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 지정서는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(개정 99. 6. 17) ③판매소 지정자에 대하여는 별표 3에 의한 공급 및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 ④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을 비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12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17 >

Yeosu Web Contents

